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강의안 요약서

제 목	우리는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장애, 한결음 다가가기)
수 상 자	곽수진, 한윤정, 신아영 (하남시장장애인복지관)
강의대상	성인 및 공무원
강의목표	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는다. 2. 장애유형별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단계	시간 (총60분)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사- 학습자)	강의자료 (매체/기자재)
도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근거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방법 등 ○ 장애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 정리 · 사전적 정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정의 	정보전달	학습 ppt
전개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보는 시각 ○ 장애의 유형과 의사소통 방법 ○ 장애인의 역량 	이야기 나누기 #장애에 대한 각자의 시각에 대해 포스트 잇에 기재 후 교육생의 발표	관련동영상 학습 ppt 포스트잇 #장애인에 대한 긍정, 부정 단어 기재 #장애인 특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자료
심화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보조기기,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보조기구 - 장애인편의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편의시설은 사회구성원 모두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장애인 인권 관련 법과 제도 	정보전달	학습 ppt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사진
정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한결음 다가가기 	토의	학습 ppt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강의 상세원고

※ 본 강의 원고는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주최:보건복지부,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상한 강의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수정 및 감수하였습니다.

□ 제 목 : 우리는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장애, 한걸음 다가가기)

□ 강의대상 : 성인 및 공무원

□ 강의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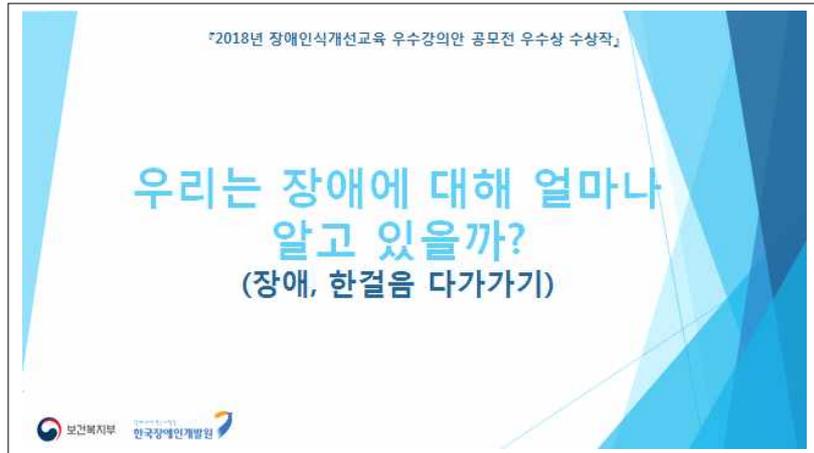
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는다.
2. 장애유형별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강의자와 학습자간 학습내용의 충실화 방안

1. 강의자와 교육생과 토의를 통한 인식개선
 - 1) 토의: 강의자와 교육생간의 상호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나눔
 - 2) 참여적 수업: 교육생의 참여와 생각을 토대로 강의자와 교육생이 만들어 가는 수업
2.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이해 도모
 - 1) 프랑스 공익 광고 ‘THE EYES OF A CHILD’ 시청: 비장애인들이 평소 생각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연민, 동정 등) 및 시청각 자료 삽입을 통해 분위기 전환과 집중력 향상
 - 2) 다양한 시청각 자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중요단어의 색상 강조로 강의 내용의 핵심을 부각시킴

□ 학습내용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TIP) 등 기타 특이사항

1. 필수 내용을 분리해 설명하지 않고, 장애유형- 특성-의사소통방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연관성 있는 강의 진행
2. 전체적인 장애인법의 설명과 최근 이슈화 된 장애인관련 법률 제·개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통해 교육생의 집중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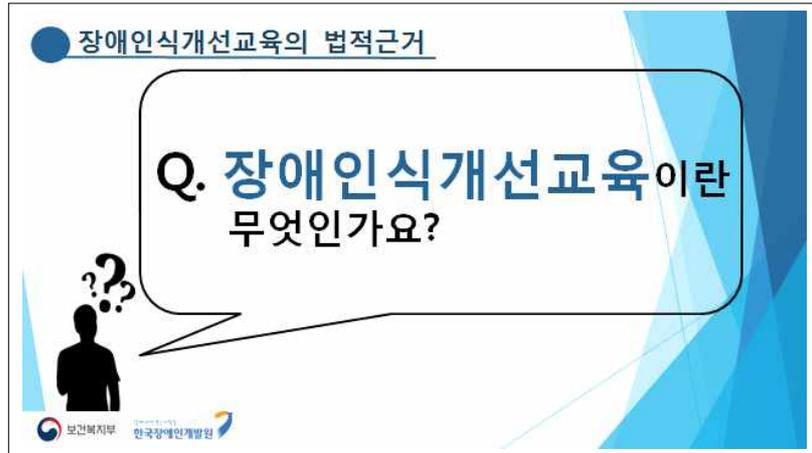
강의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의 강의를 진행할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000입니다.



강의자: 강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도입>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정의, 대상자, 필요성, 법적근거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당위성과 개괄적인 틀 설명
- ‘장애’의 단순한 사전적 정의가 아닌 한자 뜻을 토대로 현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WHO)을 통해 생각을 확장



강의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인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두 기관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2016년 6월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 2에 의해 2018년 5월부터 법정 의무화 교육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교육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장애인식개선의 법적근거

Q.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근거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특수 법인 등 *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모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강의자: 그렇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떤 대상자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교육의 대상자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소속 직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초·중·고 및 유아)도 교육 대상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인 3대 필수 교육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근거

Q.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
인가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근거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외부 또는 내부강사 활용 가능 - 원격(동영상 시청) 교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고용노동부 지정) - 전문 강사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사양성 과정 수료자)

강의자: 이번엔 장애인식개선교육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외부 및 내부강사를 활용한 집합 및 원격(인터넷 강의, 동영상 시청)교육 등이 가능하며, 대상에 따라 장애체험, 인형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유인물 배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듣기만 하면 끝인 것일까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ble-edu.or.kr>)를 통해 교육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 홈페이지에는 참고할 만한 교육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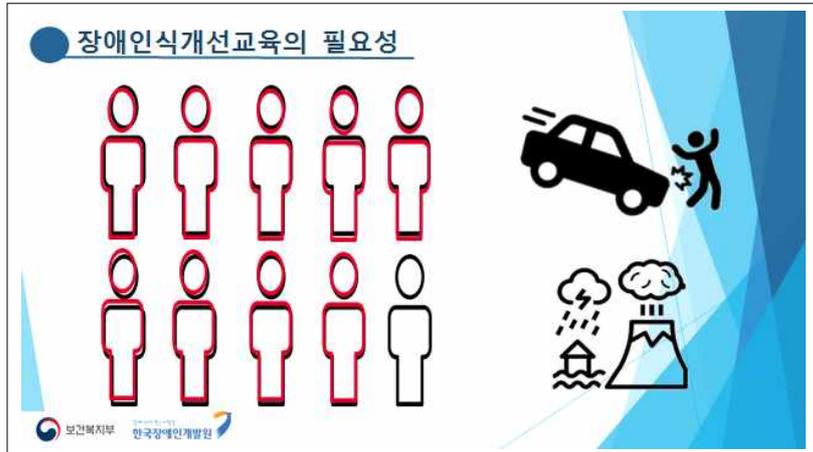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아직까지는 별도의 별칙규정(과태료 등)은 없지만 향후 법령 개정 시 관련 규정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왜 어떤 이유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비장애인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사실 우리 스무명 중 한명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인구 비중이 높다고 해서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강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있는 반면, 갑작스레 당황스러운 일들도 겪게 됩니다.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사고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10명 중 9명이 미리 대처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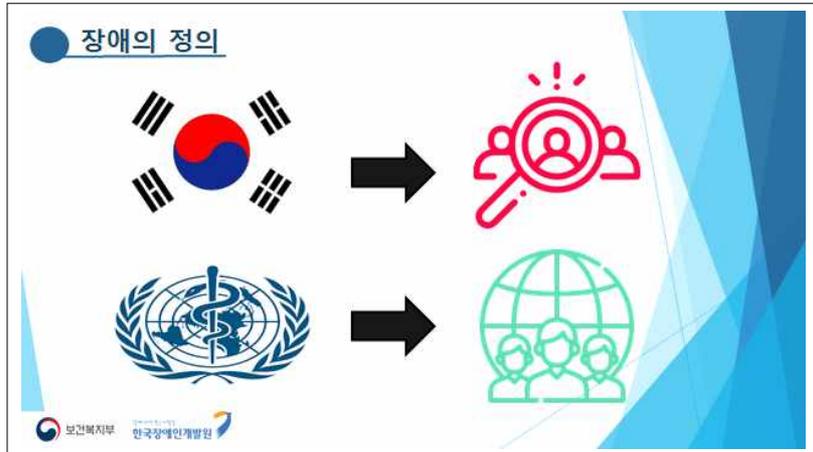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애를 입은 상태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관점을 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의자: 이제 장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는 흔히 장벽에 부딪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되어진 어원을 보면 한자 속에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을 ‘장’, 거리낄 ‘애’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뜻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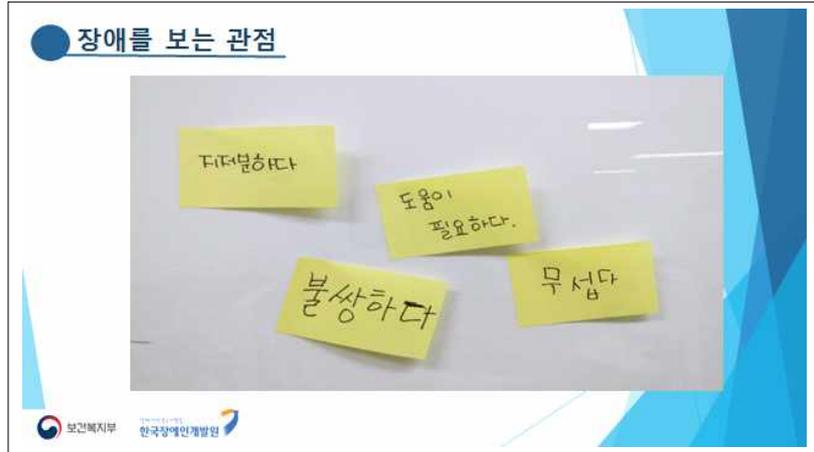
강의자: 하지만 나라마다 장애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며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01년 5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 Health)를 확정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신체기능의 어려움, 활동범위 등 개인적 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분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2016년 12월 30일에 제정, 고시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표준 건강분류는 WHO의 ICF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보건 현실을 적극 반영해 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는 장애인이 아니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출산준비와 출산으로 인한 재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로의 이민자의 경우 역시 손상이나 질병은 없으나 언어와 문화(소통)의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ICF는 과거 단순히 의학적이거나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장애를 바라보던 것에서 사회적·물리적 환경요인이 결합된 새로운 장애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개>

- 간단한 참여(포스트잇에 ‘장애인’ 단어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적기)활동을 통해 교육생이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실제적인 시선과 인식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나눔의 장을 마련
- 영상(‘THE EYES OF A CHILD’)을 통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에 대한 토론 가능
- 영상(‘나는 오티스타디자이너입니다’)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전환
- 장애유형, 특성, 의사소통 방법을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따른 기본 에티켓 교육
- 실제 공공기관 활용하는 장애인 민원 대응 메뉴얼을 시각화 하여 이해를 도모

강의자: 강의자: 교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솔직한 의견을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적어주세요

자, 먼저 긍정적 단어를 적어 주신 교육생분 왜 장애인을 보면 그런 시선이 느껴지나요?

교육생: 일단 제가 봤던 장애인은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 착할 것 같아요.

강의자: 아, 교육생분이 경험하셨던 장애인분은 언제나 웃는 얼굴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 ‘착하다’ 라는 인식이 강하셨군요. 그렇다면 부정적 단어를 적어주신 분은 어떤 이유로 적으셨나요?

교육생: 일단 약자라는 생각에 항상 보호받고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의자: 그렇군요. 교육생분은 우리 사회에서의 시선에서 보는 장애인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장애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맨발의 기봉이’ 에서 영화를 본 아이들은 실제 영화 주인공인 40세 기봉씨를 보고 “바보 같아.”, “엄마! 저기 기봉이 나와!” 라는 말을 하며 잘못된 인식과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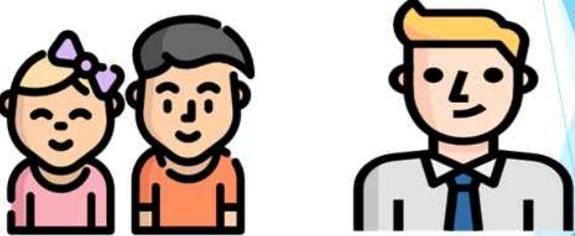
● 장애를 보는 관점(영상)
'The eyes of a child'

<https://youtu.be/WB9UvjnYO90>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를 보는 올바른 시각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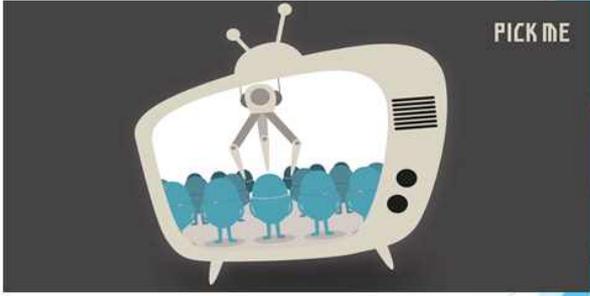
강의자: 본 영상 프랑스 노에미 재단에서 만든 공익 광고
'THE EYES OF A CHILD' (아이의 시선) 입니다.

*영상링크: <https://youtu.be/WB9UvjnYO90>

(영상종료 후) 화면에 나오는 동작을 놀이로 생각하며 즐겁게 따라하는 아이와 달리 화면에 장애인이 등장하자 표정이 굳어지고 혹시 내 아이가 따라하고 있지 않을까 확인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같은 영상을 시청했지만 생각하고 느끼는 시각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셨던 시선과 영상에 나온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장애인 역량(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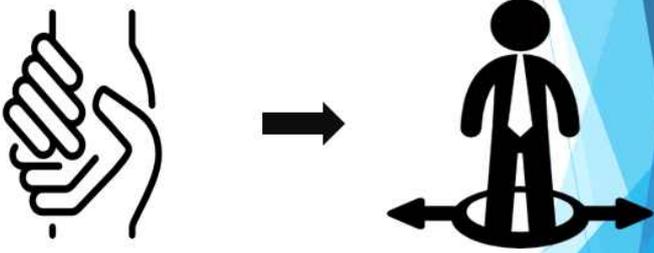
<https://youtu.be/KRUZOofyx24>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처: (출처명) (출처명) (출처명) (출처명) (출처명)

장애인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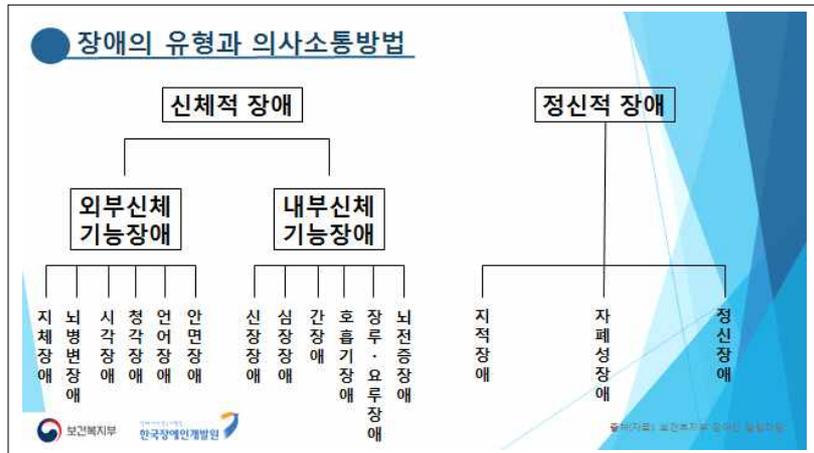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의자: 다음 영상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 김승태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상링크: <https://youtu.be/KRUZOofyx24>

(영상종료 후) 디자이너 김승태씨 외에도 다양한 역량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직업을 갖고 꿈을 그릴 수 있어 행복하다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강의자: 이번에는 장애의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12개 유형)와 정신적 장애(3개 유형)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에 따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6개 유형)로 나뉘며 내부기관의 장애에 따라 신장, 심장, 간, 장루·요루, 뇌전증, 호흡기 장애(6개 유형)로 구분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로 나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 발달장애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까요?



강의자: 첫 번째는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인체의 중심선 기능의 장애로 체간을 지지하지 팔 기능 장애로 팔기가 불가능한 경우, 다리 기능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정도를 말합니다. 뇌의 손상, 미성숙 등 고열로 뇌가 손상되어 발생하거나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신체 절단 등으로 장애가 발생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50% 해당)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다름이 있을 뿐, 비장애인과 같게 인지 능력이 저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림 설명) 지체장애인이 곤란해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무턱대고 도와줄 필요는 없으며, 곤란해 하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과 의사소통 할 때 허리를 약간 숙이거나 의자에 앉아 시선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를 묻고 대신 물건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강의자: 뇌병변장애는 뇌가 손상되어 운동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진 장애입니다. 상지, 하지마비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진행시 안면근육, 사지근육 조절이 어렵고 정확한 발음을 위해 안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정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아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장애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10% 해당)

(그림 설명) 뇌병변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알아들은 척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사무보조기기를 활용할 경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 필요여부를 물어보며 도움을 필요로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최소화 하거나 간접적(천, 옷 등으로 감싸는 등) 접촉을 해야 합니다. 간혹 타인의 신체가 닿으면 뇌병변장애인의 신체가 순간적으로 굳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육이 풀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도움 필요 의사 여부에 따라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강의자: 시각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문제로 시력이 현저히 낮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10% 해당)

시각장애이용 흰 지팡이를 주로 보조기구로 사용하며 이동을 하고 시각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청각, 촉각이 발달되어있습니다.

(그림 설명) 시각장애인과 첫 만남을 할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대화를 시작하며, 가급적 시각장애인분과 시선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누군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생기면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신체에 갑자기 손을 대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옷을 당기거나 보조기구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앞에서 수군거리는 행동은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알려주어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강의자: 청각장애는 선천적·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보조기구를 이용해 소리를 듣거나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각장애는 중이염, 외상성 고막 파열, 바이러스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도 해당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10% 해당)

구화(상대의 입술의 움직임과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것)를 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시선을 보고 입술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되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구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경우 위험한 상황(뒤에서 자동차가 오는 경우 등)에는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설명)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어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지시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과 회의 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회의나 야근, 회식 등의 공지사항은 미리 게시판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자: 언어장애는 말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말더듬증, 실어증 등이 있습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8% 해당)

언어장애가 있다고 지적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장애와 직업능력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설명) 언어장애인은 대화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대방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이해할 때까지 경청하되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표현을 함으로써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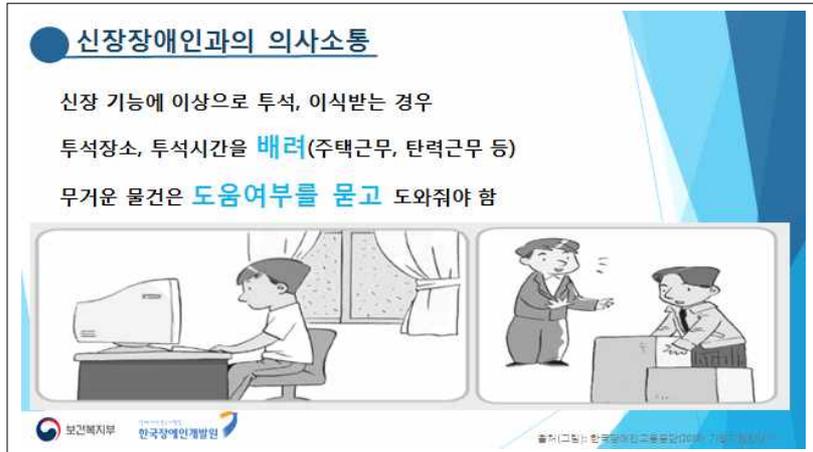


강의자: 여섯 번째는 안면장애입니다.

안면장애는 얼굴의 변형·기형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입니다. 선천성 기형, 후천적 사고·질환, 화상 등으로 인한 안면 부위의 색깔, 모양, 혹 등의 변형을 보입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1% 해당)

안면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는 빨리 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행동은 예의에 매우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외형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므로 비장애인을 대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인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림 설명)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가도록 합니다. 또한 실내의 습도나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풍 또는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강의자: 지금까지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의 종류와 의사소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내부기관의 장애의 종류와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부기관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로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아니며 장애인분들도 본인의 장애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기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평소 행동을 잘 관찰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의자: 내부기관장애인 첫 번째 신장장애입니다.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또는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3.1% 해당)

(그림 설명) 신장장애는 하루에 길게는 4시간 씩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석장소, 투석시간을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물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며 피부색이 유난히 창백하거나 검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놀라지 말고 도움을 줄 부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 심장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심장에 무리를 주는 **언행, 행동 삼가**
음주, 흡연을 권하지 말아야 함



강의자: 두 번째는 심장장애입니다.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심장이식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흔히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2% 해당)

(그림 설명) 심장장애인에게는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격한 운동이나 무리가 가능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흡연은 심장장애에 위험한 요소이므로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자: 세 번째는 간장애입니다.

간장애는 간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며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장애입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하여 쉽게 자각증세를 나타내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4% 해당)

(그림 설명) 간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피로, 둔통을 느끼기 때문에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해야합니다. 또한 소화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권하지 않아야하며, 황달증세와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시선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강의자: 네 번째는 호흡기장애입니다.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에 장애를 갖은 사람으로서 평소 거친 숨(쌔액쌔액)을 몰아쉬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0.5% 해당)

호흡기장애인과 동행 시에는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오르막길을 이용하고 장거리를 걸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는 중간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을 취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향수, 스프레이, 담배 연기 등은 호흡기장애인에게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림 설명)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쾌적한 근무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자: 다섯 번째는 장루·요루장애입니다.

장루·요루장애는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대소변을 배출해야하는 장애입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6% 해당)

장루·요루장애인분들은 외출 시 대·소변주머니를 착용하고 나가야되며 이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 외출 전 아예 굶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소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정도의 소리,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비장애인분들의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림 설명) 탈의가 잦은 근무환경, 공개적으로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루장애인의 경우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뇨현상으로 인해 잦은 화장실 사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강의자: 여섯 번째는 뇌전증장애입니다.

뇌전증장애는 원인을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선천성 기형, 감염, 종양, 뇌혈관 질환, 퇴행성 뇌질환, 외상 등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3% 해당)
 *간질장애가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됨(2014년)

(그림설명) 규칙적인 생활과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언어는 순화시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전증장애인이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 대해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고 명해지거나 행동을 멈추는 등 행동을 보이는 경우 특별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옆으로 눕히도록 합니다. 눕힐 때에는 부드러운 옷으로 머리를 받쳐주도록 하며 발작동안 몸을 떠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딱 잡거나 올라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발작동안 입도 벌어지고 침도 많이 흘리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무안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건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발작이 3분 이내 멈추지 않을 경우 즉시 응급구조대를 불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 장애에서 신체외부기능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자: 다음은 정신적 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장애입니다.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년) 지적장애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사회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7.8% 해당)

(그림 설명) 말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미숙한 경우가 있어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지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천천히 표현해야 합니다. 인지적인 부분이 낮다고 해서 어린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지적장애인에게는 연령에 맞는 ‘~씨~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와 같이 생활연령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해야 합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인을 보게 될 경우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강의자: 두 번째, 자폐성장애편입니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능력에 저하를 일으키는 신경 발달 장애를 뜻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0.9% 해당)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편으로 명칭 변경(2007년)

(그림 설명) 새로운 장소,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등이 일어나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과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폐성장애편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나 돈을 계산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자: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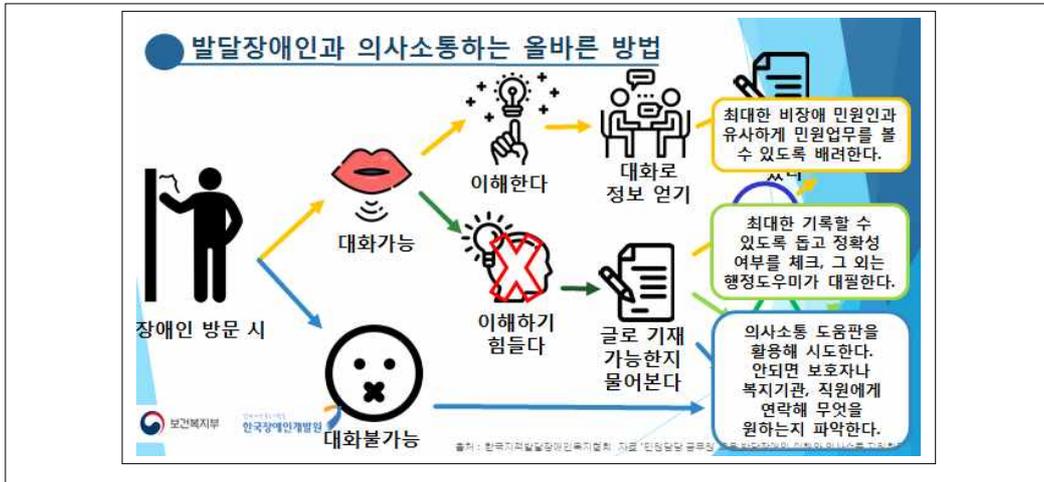
정신장애는 종류가 다양하며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등록장애인 기준 약4% 해당)

보통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생각은 정신병자라는 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닌 똑같은 시선으로 갖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림 설명)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약물 복용에 따른 증상(졸음, 갈증 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의 유형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알고 계셨던 장애의 종류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나눠져 있죠?

이렇게 많은 종류를 어떻게 외우고 종류에 따라 의사소통하는지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이 시작이며, 편협한 시선으로 장애인을 보지 않는 마음가짐이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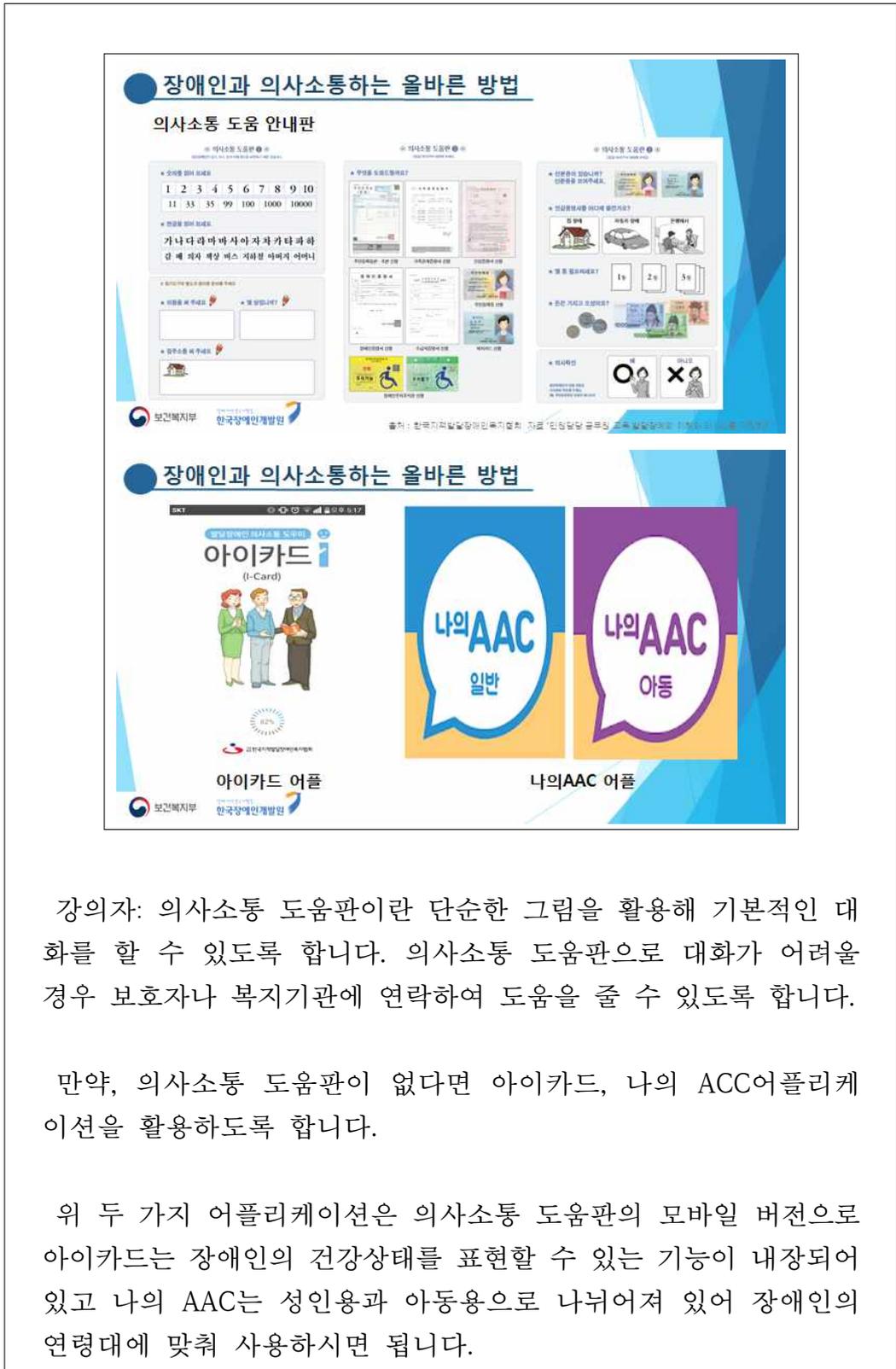
강의자: 자, 이제 한 번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실제 방문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장애인원인응대 에티켓)

직장 내 장애인이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이 업무로 방문했을 때의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보았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경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글로 적을 수 있는 경우엔 최대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글로 기재가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글로 기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우 또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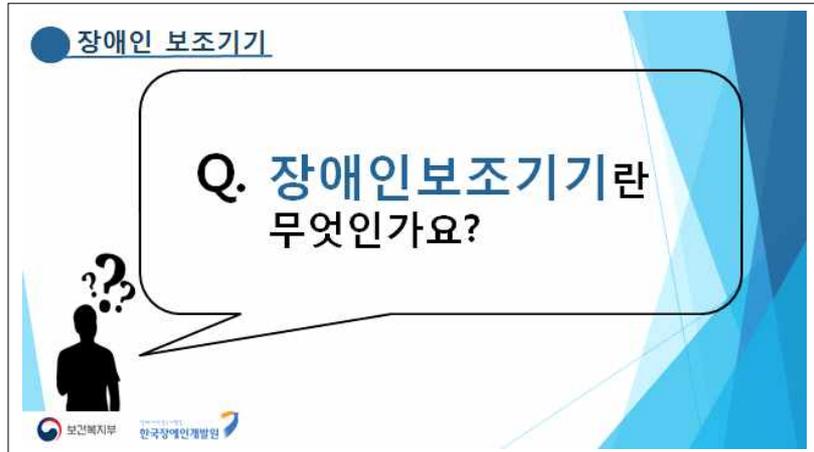
글로 기재가 제한적일 경우 최대한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정확성 여부를 체크하며 그 외는 행정도우미가 확인합니다(공무원인 경우, 대필하도록 합니다)글로 기재 가능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와 업무로 찾아왔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통 도움판을 활용합니다.



강의자: 의사소통 도움판이란 단순한 그림을 활용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소통 도움판으로 대화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나 복지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의사소통 도움판이 없다면 아이카드, 나의 AAC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위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은 의사소통 도움판의 모바일 버전으로 아이카드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나의 AAC는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뉘어져 있어 장애인의 연령대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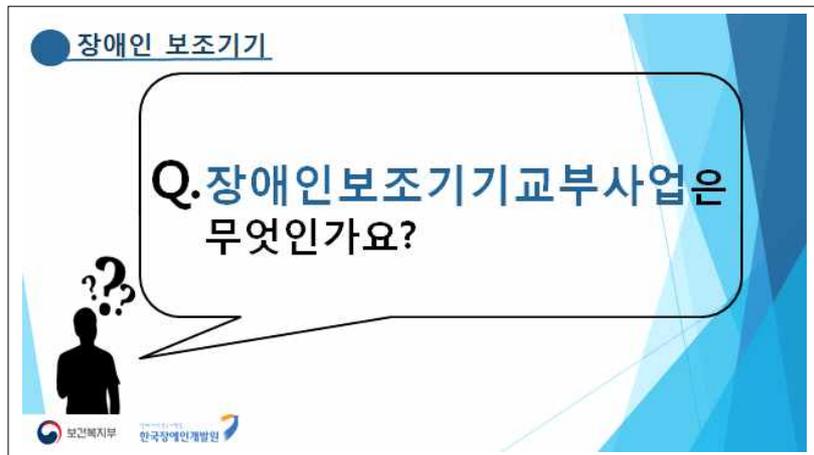


<심화>

- 보조기기를 장애유형별로 분류하여 전개과정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사진을 통해 효과적인 이해를 도모
- 장애인복지법과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다룸으로써 전문성을 향상
-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효과성을 높임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란 무엇일까요?

장애인이나 노인의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기 위해 개발한 기기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용기와 신체 조건이나 작업 환경에 맞게 디자인과 기능을 조정한 맞춤 기기로 구분됩니다.



강의자: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보조기기 교구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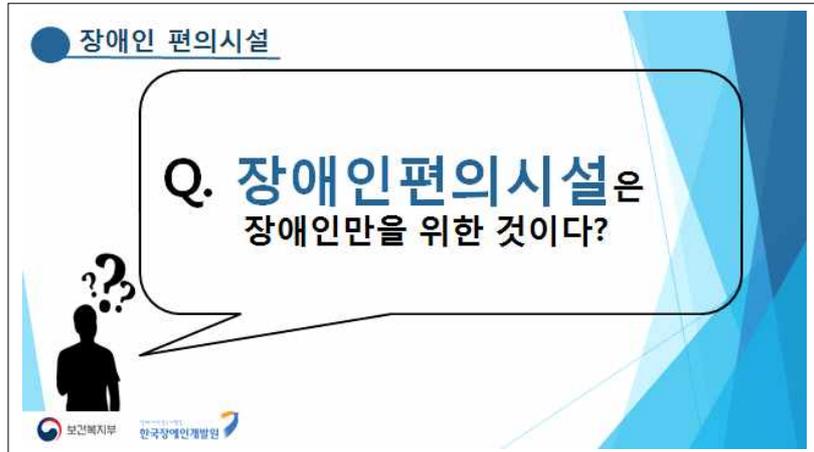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 보조기기센터에는 다양한 활동과 욕구에 맞는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진행되는 28가지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출처(자료): 2018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정보안내
<http://www.knati.go.kr/kw/Depository/151929355593630.pdf>

신체적 장애		정신적장애
 휠체어 KCS-501 / 코라워에어 서플라이	 공회 노변 특수목욕기 및 화장기/음역대용기	 나의 AAC 일반
 NC35337/ 섭취용 보조기기 유니버설포크	 NC36041/ 젓가락 및 발레 젤라틴어 나이프	
 맥플 미니 / 아환관택	 스노우 7세대 / 영대호로텍스	* 사용자 정보 입력 1 2 3 4 5 6 7 8 9 10 11 33 34 99 100 1000 10000

강의자: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과 생활을 위한 목욕의자, 보행차 등이 있으며 원활한 식사를 돕는 보조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보조기기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정신적 장애의 보조기기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의사소통 도움판과 나의 ACC어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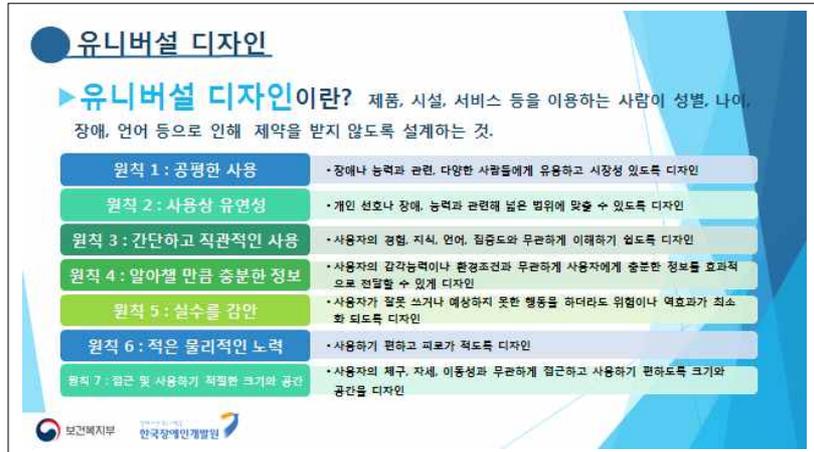


강의자: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생분들이 평소 봤던 기기들도 있고 전혀 보지 못한 생소한 것들도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편의시설은 어떤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일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용어 보다는 모두를 위한 편의 시설, 제품, 서비스를 뜻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의자: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제품, 시설 등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7가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모두가 편리한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 생활 곳곳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시설과 제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의자: 다음 사진들은 작은 변화로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준 일상 생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1) 손으로 잡고 돌려야 하는 원통형 문손잡이가 악력이 약해도 손쉽게 열수 있는 자동문이 되었습니다. 2) 팔 힘을 이용해 들어야 하는 가방이 바퀴를 부착해 누구든 손쉽게 사용가능한 가방이 되었습니다. 3) 일자형 빨대가 다양한 각도에서 음료섭취를 할 수 있도록 꺾인 빨대로 바뀌었습니다. 4) 팔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나 칫솔질이 서툰 아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 칫솔로 바뀌었습니다. 5) 뽑기 불편한 일반 콘센트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을 걸어 쉽게 뽑히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6)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노인, 치마입은 여성 등 모두가 타고 내리기 쉬운 저상버스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사용했던 시설이나 제품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출처(법률): 법자처(2018)

대한민국 헌법36조3항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위해 제정

강의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령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모든 법을 설명 드리고 또 이해하면 좋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개정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정 전	개정 후
장애인 복지법	중증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강의자: 최근 장애인 법과 관련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입니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의 정도를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른 차별적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등급제는 사람에게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를 폐지는 장애인의 종합적 욕구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장애등급’이란 단어도 ‘장애정도’로 바꿉니다.

중증장애인이든 경증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봄이 오면 나들이를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 동안 일방적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에 제한을 받던 것이 장애등급제폐지를 계기로 모든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법 개정입니다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정 전	개정 후
장애인 연금법	기초급여의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액에 8만원은 더한 금액을 추가급여액으로 조정




강의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법령 개정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상 전의 최대금액은 29만원이며 인상 후에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33만원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는 개정법입니다.



강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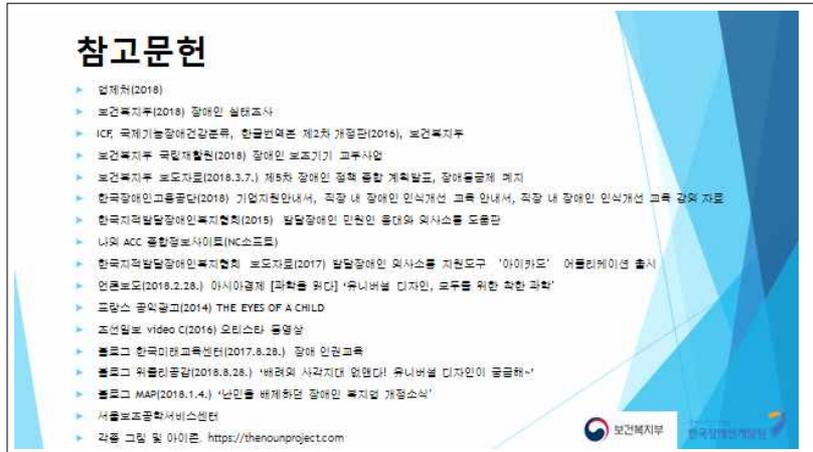
여러분, 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셨나요?

이 교육을 통해 장애에 한걸음 다가갔나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동물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 ‘주토피아’ 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인공인 토끼 경찰인 주디는 “토끼는 절대 경찰이 될 수 없다.” 는 편견을 깨고 훌륭한 경찰이 되어 마지막에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No matter what kind of animal you are, the change starts with you(당신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말처럼 이번 교육은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법제처(2018)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 실태조사
- I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한글번역본 제2차 개정판(201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3.7.)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발표, 장애 등급제 폐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기업지원안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료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2015) 발달장애인 민원인 응대와 의사소통 도움판
- 나의 ACC 종합정보사이트(NC소프트)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보도자료(2017)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도구 '아이카드' 어플리케이션 출시
- 언론보도(2018.2.28.) 아시아경제 [과학을 읽다] '유니버설 디자인, 모두를 위한 착한 과학'
- 프랑스 공익광고(2014) THE EYES OF A CHILD
- 조선일보 video C(2016) 오티스타 동영상
- 블로그 한국미래교육센터(2017.8.28.) 장애 인권교육
- 블로그 위클리공감(2018.8.28.) '배려의 사각지대 없앤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궁금해~'
- 블로그 MAP(2018.1.4.) '난민을 배제하던 장애인 복지법 개정소식'
-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각종 그림 및 아이콘, <https://thenounproject.com>